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보윤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396

발의연월일: 2025. 3. 27.

발 의 자:최보윤·서천호·유용원

박상웅 • 정성국 • 임이자

최수진 · 김선교 · 안상훈

고동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을 두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장애인이 취득·등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법에는 최근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전기자동차, 수소전기자동차 등에 대한 명시적인 감면 규정이 없으며,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의 요건이 배기량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전기자동차 등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장애인이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자동차의 대상에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추가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사용 확대를 지원하려는 것임(안 제17조제1항제5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7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	제17조(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
감면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감면) ①
장애인(제29조제4항에 따른 국	
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, 이하	
이 조에서 "장애인"이라 한다)	
이 보철용 · 생업활동용으로 사	
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	
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	
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	
세 또는 「지방세법」 제125조	
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(이하	
"자동차세"라 한다) 중 어느 하	
나의 세목(稅目)에 대하여 먼저	
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	
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	
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	
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5.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
	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
	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
	적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
	정하는 자동차

② · ③ (생 략)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